SHIN&KIM
법무법인(유) 세종

Legislative & Policy Weekly

세종Law *Focus*

주간 입법·정책 동향

Vol.315 | 2026.1.12 (2026.1.5~2026.1.11)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2. 입법(행정)예고 법안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Contact: 백대용 변호사(파트너)

02-316-4630, 010-3248-5382
dybaek@shinkim.com

Summary

【정부의 주요 정책】

<재정경제부>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의 **「디지털세 필라2 글로벌최저한세(이하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개편방안」** 을 발표하였습니다. 글로벌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세원잠식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최소 15%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호주 등 주요국은 '24년부터 글로벌최저한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입법(행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이용자 수 산정 기준을 변경하는 등의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는 생활숙박시설의 건축허가 시 허가권자가 알려야 하는 사항 및 사용승인 시 허가를 받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규정하고, 감리보고서에 첨부하는 품질시험성과 총괄표를 제출해야하는 대상 공사를 명시하는 등의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검토 실익이 적은 49건의 규제 재검토 주기를 해제하는 등 총 16개의 부령을 정비하려는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안」** 등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법률 발의 및 제출안】

증권 분야를 포함한 소액·다수 불법행위 피해자들을 위한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집단소송법안(오기형의원 등 19인)」,**

침해사고의 통지 의무 대상에 동일 접근매체의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계열회사에서 발생한 사고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2인)」,**

원도급거래 관련 정보 중 자신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에 필요한 정보를 원사업자(또는 발주자)에게 요청할 권리를 부여하는 등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2인)」,**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장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중요한 내용을 장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를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의원 등 10인)」,**

부가통신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부가통신서비스 가입 절차보다 변경·해지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하거나, 가입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만 해지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등 이용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2인)**」

목소리, 얼굴 등이 갖는 경제적 이익 내지 가치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 소위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를 위한 법률을 별도로 마련함으로써 개인의 목소리, 얼굴 등 이용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하여 오늘날의 거래 현실에 부합하도록 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개인의 목소리, 얼굴 등의 무분별한 이용에 대응하기 위한 「**퍼블리시티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박수현의원 등 18인)**」,

영화의 정의를 개정하여 OTT 영화도 법률상 영화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의원 등 12인)**」,

정년을 연장할 때에 그 구체적 기준을 사업주, 근로자 및 정부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사회적 기구의 심의 및 의결을 통하여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로 하여금 퇴직 후 재고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식과 임금차등 등의 기준에 따라 필요한 연장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4인)**」,

발전사업자·공공기관 등에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설정 및 관리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자에게 의무적으로 재생에너지를 보급하도록 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2인)**」,

구인자가 채용광고를 최초 게시할 때 기재해야 하는 중요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구인자는 이를 준수하도록 하며, 채용 광고를 게재·중개하는 자들 또한 채용광고의 중요사항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0인)**」,

불공정한 계약의 요건을 '당사자 일방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경우'로 개정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2인)**」,

광역권(도시권) 단위의 혁신 거점, 교통망 등 사업을 묶어 범부처가 지원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특례를 두어 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광역권 개발 및 성장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문진석의원 등 11인)**」 등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국회의사일정(안)】

<법사위>, <농해수위>에서 법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재경위>**에서 국무위원후보자(이혜훈)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 등을 위한 전체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바로가기

- 「글로벌 최저한세 개편방안」 발표(재정경제부) ····· 6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바로가기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재정경제부) ····· 7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과학기술정보통신부) ····· 7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산업통상부) ····· 7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농림축산식품부) ····· 8

2. 입법(행정)예고 법안 바로가기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0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기후에너지환경부) ····· 10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고용노동부) ····· 10
-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 11
-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안(국토교통부) ····· 11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바로가기

- 집단소송법안(오기형의원 등 19인) ····· 12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2인) ····· 12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2인) ····· 12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2인) ····· 13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1인) ····· 14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0인) ····· 14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1인) ····· 14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의원 등 10인) ····· 15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2인) ····· 15
-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에 대한 특별법안(이해민의원 등 13인) ····· 16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의원 등 13인) ····· 16
- 퍼블리시티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박수현의원 등 18인) ····· 17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의원 등 12인) ····· 17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0인) ····· 18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1인) · 18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1인) · 19
-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0인) · 19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1인) · 20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0인) · 20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1인) · 21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2인) · 21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4인) · · · 21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2인) · · · · · · · · 22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0인) · 23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3인) · · · · · · 23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2인) · 23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4인) · 24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의원 등 12인) · 24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복기왕의원 등 18인) · · · · · · · · · · · · · · · · · 25
- 광역권 개발 및 성장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문진석의원 등 11인) · 25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바로가기

1.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바로가기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313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바로가기

- **[소송]**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인 분쟁의 유형(해상경계, 매립지 관할 분쟁 포함)과 시사점
- **[노동]** 월간 노동 뉴스레터
- **[금융]** 월간 기업·금융분쟁 뉴스레터
- **[노동]** 고용노동부의 '노란봉투법 해석지침(안)'이 공개되었습니다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정경제부	**「글로벌 최저한세 개편방안」 발표** - 자체 최저한세제도 운영국가에 대해 글로벌최저한세 적용배제 허용 - 글로벌최저한세 실효세율 계산 시 지출액·생산량에 기반한 세액공제 우대 - 기업 편의 증진 위해 간소화된 글로벌최저한세 실효세율 계산방식 도입	**2026-01-0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145개 이상 회원국의 승인을 거쳐 **「디지털세 필라2 글로벌최저한세(이하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개편방안」** 을 발표하였음

* Inclusive Framework : OECD/G20가 주도하는 국제조세개혁 추진 회의체

글로벌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세원잠식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최소 15%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임. 우리나라를 비롯한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호주 등 주요국은 '24년부터 글로벌최저한세를 시행하고 있음

글로벌최저한세와 동일한 정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자체 최저한세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경우, 다른 국가에서 글로벌최저한세 과세 시 이중과세 문제에 노출된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음. 이후 주요 7개국 협의체(G7)는 성명문 발표('25.6.28일)를 통해 글로벌최저한세와 자체 최저한세제도가 "병행(Side-by-Side)" 할 수 있는 방안을 포괄적 이행체계(IF)에서 마련키로 합의하였음

이후 포괄적 이행체계(IF)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재정위원회(CFA : Committee on Fiscal Affairs), 운영위원회(SG : Steering Group), 실무작업반(WP11 : Working Party 11) 차원의 회의를 수차례 거친 결과, 주요 7개국 협의체(G7) 성명문 이행과 글로벌최저한세의 안정성과 확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패키지 형태의 글로벌최저한세 개편방안(Side-by-Side Package)을 마련하였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❶ 글로벌최저한세 병행 체계 마련(Side-by-Side System)

포괄적 이행체계(IF)는 글로벌최저한세와 개별 국가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최저한세가 병행(Side-by-Side) 할 수 있는 체계를 개발하였음

올해부터 특정 국가가 글로벌최저한세와 충분히 유사한 제도(이하 '적격 병행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최종모기업이 해당 국가에 소재한 다국적기업그룹은 글로벌최저한세 중 소득산입규칙과 소득산입보완규칙을 적용받지 않아 해당 그룹의 다른 구성기업 소재지국은 글로벌최저한세를 과세하지 않음

❷ 실물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우대(Substance-based Tax Incentives Safe Harbour)

포괄적 이행체계(IF)는 각 국이 시행 중인 조세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에서 '26년부터 실물투자와 관련한 세제 인센티브를 '적격 세제 인센티브'로 정의하고, 한도금액 범위 내에서 글로벌최저한세 실효세율에 영향이 없도록 하여 글로벌최저한세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합의하였음

'적격 세제 인센티브'는 기업의 지출액 또는 생산량과 연동하여 지급되는 소득공제·세액공제 등을 의미하며, 단순 세액감면 및 재정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은 제외됨.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미국의 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등이 '적격 세제 인센티브'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며, 해당 제도에 근거해 공제액을 수령하는 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 세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

❸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간소화(Simplified ETR Safe Harbour & Extension of the Transitional CbCR Safe Harbour)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납세협력부담과 세무당국의 행정부담도 경감함. 기업은 '26년 또는 '27년부터 현행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지침보다 간소화된 국가별 실효세율 계산방식을 활용하여 글로벌최저한세 적용면제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됨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시행일자
재정경제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6-01-06 시행

2024년 9월 7일에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정식 서명되고, 2025년 9월 2일에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 간의 전략적경제협력협정」이 정식 서명됨에 따라 **아랍에미리트 및 에콰도르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하는 협정관세율을 정하고, 긴급관세조치의 세부내용,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협의절차 등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26-07-07 시행 예정

불법정보의 기준을 보완하고, 고의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포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 대해서는 징벌적 요소를 반영하여 일반적인 손해배상보다 무거운 배상 책임을 지우도록 하며,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어 관련 재판의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반복적으로 유통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비방 목적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에 대한 벌금형을 상향하며, 그 이득의 몰수·추징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불법정보와 허위정보의 폐해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산업통상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6-01-08 시행

종전에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을 신청하는 기업의 해외사업장 축소 여부를 매출액 또는 생산량의 감소만으로 판단하였으나, 앞으로는 **설비 매각, 생산시설의 일부 폐쇄 등으로 해외사업장을 실제 축소한 경우로 지원 대상을 한정하고, 해외사업장 축소완료 신고 시 그 축소 방법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등 해외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축소하고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6-01-08 시행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매시장법인의 매매방법으로 온라인에서 경매 또는 입찰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및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은 부류별로 일정 면적의 하역인 편의시설을 필수시설로 갖추도록 하는 한편,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를 반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매사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의 반환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의견접수기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01.09. ~2026.02.19.

최근 전방위적인 해킹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이 가속화된 현 상황을 신속히 극복하고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하여, 정보보호 공시 의무를 대폭 확대하는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10.22., 관계부처 합동)」이 발표됨에 따라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자 범위를 유가증권시장 상장 법인 및 코스닥 시장 상장 법인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사업자까지 확대하고, 이용자 수 산정 기준의 공평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평균에서 전년도 평균으로 이용자수 산정 기준을 변경하는 한편 그동안 정보보호 의무 공시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공공기관, 소기업, 금융사업자, 전자금융사업자 등의 제외 조건을 삭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민·관의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여 국가의 정보보호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 문의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산업과 (전화: 044-202-6452, 팩스: 044-202-6037)

기후에너지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01.05. ~2026.02.19.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책임에 따라 조치명령 순위를 두는 우선순위제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부적정처리폐기물 발생 예방 또는 처리를 위해 노력한 토지소유자의 대집행 청구 비용을 감경하여 선량한 토지소유자를 보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 문의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전화: 044-201-7345, 팩스: 044-201-7351)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01.05. ~2026.02.19.

고용유지지원금 확대지원 사유에 '고용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되어 특별지원이 필요하게 된 경우'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21133호, 2025. 11. 11. 공포, 2026. 5. 12. 시행)됨에 따라, **전국적 고용위기시 고용유지지원금 확대지원 방안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유형별(휴업, 휴직)로 지원 요건 및 절차를 달리하여 운영하였던 것을 완화된 요건으로 일원화함으로써 복잡한 절차를 개선하고 제도의 활용 및 편의를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 (전화: 044-202-7229, 팩스: 044-202-8032)

국토교통부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01.05. ~2026.02.19.

생활숙박시설의 건축허가 시 허가권자가 알려야 하는 사항 및 사용승인 시 허가를 받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규정하고, 감리보고서에 첨부하는 품질시험성과 총괄표를 제출해야하는 대상 공사를 명시하고, 공동주택 단지 내 가설건축물 설치 동의 절차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문의처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전화: 044-201-3757, 팩스: 044-201-5574)

국토교통부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안	2026.01.06. ~2026.02.19.

규제를 실효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25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실무수습의 방법, 절차 등 **재검토 실익이 적은 49건의 규제 재검토 주기를 해제하는 등 총 16개의 부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 문의처 :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화: 044-201-4817, 팩스: 044-201-5517)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집단소송법안(오기형의원 등 19인)	2026-01-06 발의

온라인 플랫폼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가습기살균제 사건, 자동차 제작사 배기가스 조작 사건, 라돈침대 사건 등 기업 이윤추구 과정에서 고의·과실에 따른 불법행위가 발생하기도 함. 이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된 경우, 현행법상 증권분야 외에 피해자들을 위한 집단적 구제수단이 미흡한 상황임. 이 경우 소송비용이 피해자 개인에게 발생한 피해규모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움

그런데 증권분야의 피해자들과 다른 분야의 피해자들을 달리 취급할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증권분야에는 집단소송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집단소송에 관한 제도가 마련되지 않음

이에 **일반적 불법행위에 적용될 수 있는 집단소송법을 마련하여, 증권 분야를 포함한 소액·다수 불법행위 피해자들을 위한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 권익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

정무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2인)	2026-01-06 발의

현행법은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침해사고의 발생 시 금융위원회에 즉시 통지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최근 특정 온라인쇼핑몰 업체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침해사고의 통지의무를 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됨

최근 발생한 침해사고의 경우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사업자와 전자지급결제대행회사가 계열회사 관계로, 하나의 이용자번호 등의 접근매체로 접속하여 별도 결제 정보 입력 없이 간편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온라인쇼핑몰을 통한 접근매체 등 정보 유출에 따라 전자지급결제대행회사의 결제정보까지 유출될 우려가 제기됨. 그러나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현행법상 금융회사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사고가 발생하여도 금융위원회에 대한 통지 의무 등을 포함한 현행법상 규제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아니함

이에 **침해사고의 통지 의무 대상에 동일 접근매체의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계열회사에서 발생한 사고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연이어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 등의 침해사고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고자 함 **(안 제21조의5제2항 및 제3항 등)**

정무위원회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2인)	2026-01-06 발의

현행법은 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 규정을 두어 특약매입, 매장임대, 위수탁거래의 경우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직매입거래의 경우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에게 상품판매대금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형마트 홈플러스의 사태 등으로 인하여 다수의 납품업체와 입점업체들이 대금 회수에 불안을 느끼는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상품판매대금 지급의 정산주기를 단축하는 동시에 대규모유통업자의 파산 등의 경우에도 영세한 납품업체 등이 안전하게 정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판매대금의 정산기한을 단축하여 납품업체의 현금 흐름이 개선되도록 하고, 판매대금의 보호 규정을 신설**하여 대규모유통업자 파산 등에도 납품업체의 판매대금이 안전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8조의2 신설 등)

정무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2인)	2026-01-07 발의

현행법에는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거나 하도급대금을 2회분 이상 미지급한 경우 수급사업자의 청구에 의해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원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수급사업자도 원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연쇄적으로 지급받지 못할 위험이 커지나,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체결한 원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원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위험을 미리 알기 어려워 적시에 발주자로부터 직접지급을 청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급사업자가 신속히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하여 하도급대금을 안전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원도급거래 관련 정보 중 자신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에 필요한 정보를 원사업자(또는 발주자)에게 요청할 권리를 부여**하고자 함 **(안 제14조제6항 신설 등)**

또한, 현행법은 건설하도급거래의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하고 있으나 발급받은 지급보증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확히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수급사업자가 지급보증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원사업자가 지급보증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보증금을 청구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가입 여부를 인지할 수 있도록 수급사업자에 대한 지급보증서 교부 의무를 명시**하려는 것임 (안 제13조의2제5항 개정)

아울러 현행법에 따라 지급보증금액을 산정시 원사업자의 보증금액이 공사대금을 넘어 최대 2배까지 산정되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함

이에 **원사업자의 규제부담을 합리화하기 위해 원사업자의 지급보증금액이 하도급대금을 넘어서지 않도록 상한을 설정**하려 함 **(안 제13조의2제1항 개정 등)**

정무위원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1인)	2026-01-07 발의

최근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거나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하는 등 불법 대부행위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불법 대부업자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원리금을 특정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음

현행법상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즉각적인 지급정지가 가능하나, 불법 대부행위에 이용된 계좌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범죄 수익의 인출을 막거나 피해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이 불법 대부행위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대하여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선의의 계좌 명의인을 보호하기 위한 이의제기 절차 및 지급정지 종료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함으로써 불법 대부행위로 인한 금융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금융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안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신설 등)**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0인)	2026-01-08 발의

현행법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국가전략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인력개발비와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에 대한 투자비용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공지능 산업의 급격한 발전으로 대규모 전력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부족한 전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형모듈원자로(SMR)가 대두되고 있으며 세계 각 국은 소형모듈원자로 개발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소형모듈원자로의 개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소형모듈원자로를 포함하고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5%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안 제10조제1항제2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1인)	2026-01-05 발의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수립한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주요방송통신사업자가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 중에서 이용자 수 또는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도 포함됨. 그런데 트래픽 양을 기준으로 주요방송통신사업자를 지정할 경우 재난 상황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부가통신사업자까지 의무대상에 포함되어 불필요한 규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원칙적으로는 트래픽 양 등을 기준으로 주요방송통신사업자를 지정하되, 서비스 특성을 고려하여 국민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하여 규제의 실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안 제35조제1항 단서, 제35조의2제1항제1호의2 신설)**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의원 등 10인)	2026-01-05 발의

현행법은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용자의 거주 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을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요금과 명확하게 구분하여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5G 기술의 발달로 고가의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와 이동통신단말장치가 출시되면서, 이동통신사업자 등이 지적장애인, 발달장애인 등 장애인에게 불필요한 요금제와 단말장치를 명확한 설명 없이 판매하여 장애인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장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중요한 내용을 장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장애인 차별을 예방하고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32조의12제1항, 제32조의15제4항 신설)**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2인)	2026-01-08 발의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의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온라인 플랫폼 등 부가통신사업자가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등의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설계·운영하면서 이용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다크패턴(Dark Pattern)에 대한 명시적인 규제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그러나 최근 일부 부가통신사업자가 서비스 가입은 간편하게 하면서 해지 절차는 복잡하게 설계하거나, 가입 시와는 다른 방법으로만 해지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등 다크패턴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용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부가통신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부가통신서비스 가입 절차보다 변경·해지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하거나, 가입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만 해지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등 이용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50조제1항제12호 신설 등)**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에 대한 특별법안(이해민의원 등 13인)	2026-01-08 발의

인공지능은 단순한 기술을 넘어 국가의 산업 경쟁력과 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동력으로 부상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는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전략 자산이자 필수 기반 시설임

현재 세계 각국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인공지능기술 패권 확보를 위해 기가와트급의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구축에 사활을 걸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전력, 부지, 세제 등을 파격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우리 정부 역시 'AI 3대 강국(G3)'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낡은 규제와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 현행 「전기사업법」 및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체계에서는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의 직접 전력거래가 극히 제한적이거나 소규모로만 허용되고 있어, 기가와트급의 대규모 전력을 필요로 하는 하이퍼스케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는 발전소 인근에 입지하고도 전력을 공급받지 못하는 심각한 제도적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체계적인 진흥과 기반 조성을 위한 독립된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특히 비수도권에 입지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대해서는 대용량 발전원과 직접 전력을 거래할 수 있는 과감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신속한 확충과 지역 균형 발전을 동시에 도모하고 국가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의원 등 13인)	2026-01-09 발의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과 허위사실의 적시를 통한 명예훼손을 모두 처벌하고 있으나, 사실의 적시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며 공적 사안에 대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오랜기간 제기되어 왔음. UN 자유권규약위원회를 비롯한 국제사회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비범죄화를 권고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는 사실의 적시를 처벌하지 않고 있음. 아울러 제3자가 현행 제도를 악용하여 고발을 남발하는 사례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사실의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처벌 조항을 삭제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아울러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죄에 대하여는 반드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안 제70조제1항 및 제3항)**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퍼블리시티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박수현의원 등 18인)	2026-01-05 발의

인공지능 기술 발전 및 관련 산업 활성화로 인해 유명 가수나 연기자, 스포츠 스타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목소리, 얼굴 등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요소들이 무단 이용될 위험성이 크게 증대되었고, 최근에는 이를 무단 이용하여 인공지능 커버곡, 딥페이크 콘텐츠 등을 제작함으로써 개인의 경제적 이익 및 가치가 침해되는 사례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개인의 목소리, 얼굴 등은 이미 방송·영화·음악 등 여러 분야에서 경제적 이익 및 가치를 인정받아 독립된 경제재로서 거래가 되고 있으나, 현행 법체계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적절히 규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특히, 사람의 목소리, 얼굴 등이 갖는 경제적 이익 및 가치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지배할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상속이나 보호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목소리, 얼굴 등이 갖는 경제적 이익 내지 가치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 소위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를 위한 법률을 별도로 마련함으로써 개인의 목소리, 얼굴 등 이용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하여 오늘날의 거래 현실에 부합하도록 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개인의 목소리, 얼굴 등의 무분별한 이용에 대응**하고자 함. 궁극적으로 개인의 권리 보호 및 공정한 이용을 균형있게 규율함으로써 문화적 가치 창출과 문화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의원 등 12인)	2026-01-05 발의

현행법은 '영화'를 극장 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한정하고 있어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공개되는 OTT 영화는 법률상 '온라인비디오물'로 분류되고 있음. 그런데 OTT를 통해 제공되는 영화 또한 국민과 산업계 전반에서 일반적으로 영화로 인식되고 있으며, 주요 국제영화제에서도 OTT 공개작인 경쟁부문에 초청되는 등 사회적 통념과 법적 개념 간에 괴리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영화산업의 제작·유통 구조가 영화관 중심에서 OTT를 포함한 다양한 플랫폼 기반의 복합 유통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유통매체가 아닌 콘텐츠 자체의 특성과 서사적 완결성을 중심으로 한 정의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영화의 정의를 개정하여 OTT 영화도 법률상 영화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사회적 인식과 법적 체계를 일치시키고 영상 콘텐츠 산업 전반에 법적 정비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0인)	2026-01-05 발의

AX와 DX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소재·부품·장비산업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성장 산업의 핵심 기반으로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음. 특히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연이은 글로벌 위기 상황은 안정적이고 자립적인 공급망 구축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켰음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정부는 소부장 특화단지를 지정·운영하며 산업생태계 조성에 힘써왔으나, 단순히 물리적 공간을 조성하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의미의 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실제로 현장에서 입주기업 간의 협력, 연구개발의 성과가 사업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지원이 다소 부족한 실정임

무엇보다 특화단지가 단순한 기업 집적지를 넘어 진정한 혁신생태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조직이 필요함. 미국의 실리콘밸리, 중국의 선전 등 세계적인 혁신 클러스터들은 모두 강력한 중간지원 조직을 통해 기업 간 네트워킹, 기술개발 지원, 사업화 촉진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큼

현행법에는 특화단지의 지정과 기본적인 지원 방안은 규정되어 있으나, 단지 운영을 전담할 전문 지원조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음. 이에 **특화단지지원단 제도를 도입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책임 아래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소부장 산업의 혁신역량을 극대화**하고자 함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1인)	2026-01-07 발의

최근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지역 청년층의 유출이 가속화되면서 인구감소지역의 중소기업은 신규 인력 확보와 장기근속 유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경제의 활력 저하와 산업기반 약화가 우려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인력지원사업을 수행할 때 지방 소재 중소기업을 우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인구유출이 심화되고 있는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장기근속 및 지역정착 지원에 관한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또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연령 기준을 3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학업기간 장기화와 사회진출 지연 등 사회여건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연령 기준을 39세 이하로 확대하여 지원대상을 현실화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중소기업에 2년 이상 근속한 청년근로자에게 장기재직 및 지역정착을 지원하는 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의 청년근로자 장기재직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고 청년근로자의 장기재직과 지역정착을 촉진하려는 것임 **(안 제2조 등)**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1인)	2026-01-08 발의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경영 기반 확충을 위하여 협업지원사업, 입지 지원사업, 환경오염 저감 지원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부각되면서, 중소기업의 생산공정과 사업 활동 전반에서도 에너지의 생산·소비 구조를 전환하고 에너지 이용 효율을 제고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특히 중소기업은 기술·자금·전문인력의 제약으로 인해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공정 개선이나 설비 도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의 사업 활동 전반에서 에너지의 생산·소비 구조를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생산공정의 개선과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설비·장비 도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42조의2 신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0인)	2026-01-08 발의

현행법에 따른 전시시설은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의 개최에 필요한 시설과 관련 부대시설을 말하며, 이러한 전시시설은 국제 행사·회의 등이 개최되어 대규모 인원이 밀집되는 다중이용시설임

이에 따라 전시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는 물론 국가이미지의 신뢰성 제고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전시시설의 내진 성능 확보 및 지진 피해 최소화에 대한 대책은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현행 내진설계 기준은 건축물의 구조적 요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천장재, 가설 벽체 등 비구조적 요소와 전등, 전기설비 등 전기 관련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내진설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전시시설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내진설계 기준을 정하는 등 지진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화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전시시설 안전관리 강화 및 전시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11조의2 신설)**

보건복지위원회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1인)	2026-01-05 발의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영상을 활용하여 의약품, 의약외품 등의 효과를 허위 또는 과장하여 광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의사 등 권위있는 자가 식품이나 의약품을 권유하는 것처럼 인물을 합성하거나, 'Before → After' 형태의 신체변화 설명시 After 부분을 합성하여 효과를 과장하는 형태의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태가 빈발하는 실정임. 최근 이러한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여러 분야의 폐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의약품, 의약외품 분야의 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이에 **인공지능기술로 생성된 결과물도 과장 광고 등에 포함되도록 명확하게 입법** 보완하려는 것임 (안 제68조 제2항)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0인)	2026-01-05 발의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영상을 활용하여 의료기기 등의 효과를 허위 또는 과장하여 광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의사 등 권위있는 자가 의료기기 등을 권유하는 것처럼 인물을 합성하거나, 'Before → After' 형태의 신체변화 설명시 After 부분을 합성하여 효과를 과장하는 형태의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태가 빈발하는 실정임. 최근 이러한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여러 분야의 폐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의료기기 분야의 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이에, **인공지능기술로 생성된 결과물도 부당 광고에 포함되도록 명확하게 입법** 보완하려는 것임 **(안 제24조제2항)**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1인)	2026-01-06 발의

공유주방에서 제조·가공·조리한 식품으로부터 입은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도입한 공유주방 운영업 사고배상 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0호의2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에 해당하여 동법 제76조의2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이에 보험회사 등의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 계약체결 거부 제한 등 보호조치를 신설함으로써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동 제도의 도입 취지를 달성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은

① **보험회사의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체결 거부 제한 및 보험금지급청구권 압류 금지 규정 신설을 통해 보험 가입 대상인 공유주방 운영업자의 법 준수 가능성을 제고하고 피해 소비자의 생계 보호 취지를 달성하고자 함 (안 제44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② **제44조의2제2항을 위반한 계약체결 거부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의무 이행을 유도함 (안 제101조제1항 신설)**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2인)	2026-01-05 발의

현행법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구인자가 체불사업주인 경우 그 사실을 게재하고,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구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구인광고의 거짓 여부를 게재 단계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허위·과장 구인광고에 의한 취업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인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증절차 등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책임규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구인자의 신원 또는 기업정보, 직업정보의 허위·과장 여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니터링 및 검증을 실시하도록 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에 대한 결격사유를 규정**함으로써 해외 거짓 구인광고에 의한 취업사기로부터 구직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25조제3호 신설 및 제38조)**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4인)	2026-01-07 발의

일각에서는 법정 정년을 전 분야에 걸쳐 '65세'로 일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최일선 산업 현장의 현실과 기업들의 경영 여건, 근로시장의 복합적 구조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 기준'을 다시 한번 상향 조정하는 방식에 불과하다고 할 것임. 이렇게 법정 정년을 일률적으로 '65세 상향 강제'할 경우, 인건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중소기업과 영세 사업장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며, '청년들의 신규 채용 위축', '세대간 일자리 갈등 심화', '형식적 고용 유지에 따른 생산성 저하' 등의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매우 큼. 나아가 산업과 직무 특성에 따라, 고령 근로자의 계속 고용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영역까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비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전 사회적으로 고령자 고용 전반에 대한 '근로 수용성을 저해할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음

이에 **'정년'을 연장할 때에 그 구체적 기준을 법률에서 획일적으로 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업주, 근로자 및 정부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사회적 기구'의 심의 및 의결을 통하여 기업 규모, 업종, 산업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정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해, 정년과 같이 '갈등 가능성'이 크고 '사회적 환경 변화에 민감한 사안'을 '경직된 법률적 규정'이 아닌 '구체적 하위 법령'에 의하여 '사회적 합의 시스템'이라는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유연하게 조정함과 동시에 현실적 근로시장에 더 부합한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아울러 현행 법체계 하에서는 정년 연장 외에 '퇴직 후 재고용' 등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선택지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노사간 협의가 경직되고 정년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 반복되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퇴직 후 재고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식과 임금차등 등의 기준에 따라 필요한 연장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사업주가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로 다양한 고용 유지 방안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틀을 구축하고자 함 **(안 제19조제3항 및 제4항, 안 제19조의3 신설)**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2인)	2026-01-08 발의

현행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이하 "RPS"라 함)는 대규모 발전사에게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에 기여하려는 제도임

그런데 신·재생에너지 보급환경의 변화와 함께 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의 가격 변동성이 커서 RPS의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음. 특히, 공급인증서 관련 발전사들의 자체 투자보다 외부 구매, RE100 기업(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려는 글로벌 기업)과 수요의 경합, 수급 불균형 등으로 현물시장 공급인증서 가격이 상승하여 기업의 경쟁력 저하와 가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발전사업자·공공기관 등에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설정 및 관리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자에게 의무적으로 재생에너지를 보급하도록 하며, 보급의무대상자 등에게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및 보급의무를 기준금액 납부 또는 면제를 통하여 대체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부 중심의 재생에너지 계약시장제도의 도입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을 달성하고 탄소중립 이행 목표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10조, 제12조의5 및 제12조의14부터 제12조의21까지 신설 등)**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0인)	2026-01-09 발의

현행법은 구인자가 채용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채용광고의 내용을 불리하게 변경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채용광고의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러한 공백을 악용하여 일부 구인광고에서는 특수한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지원하는 모든 구직자가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기재하고, 모호한 단어 사용으로 구직자가 실제로 하게 될 직무와는 상이한 직무를 기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와 같은 구인자의 기만행위로 인해 구직자는 계약 체결 직전 혹은 입사 이후에야 직무 내용, 임금 등이 광고 내용과 상이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상황임

이에 **구인자가 채용광고를 최초 게시할 때 기재해야 하는 중요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구인자는 이를 준수하도록 하며, 채용 광고를 게재·중개하는 자들 또한 채용광고의 중요사항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직자와 구인자 간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함으로써 구직자의 권익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4조 및 제17조)**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3인)	2026-01-09 발의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재원 조달 수단의 확보가 필수적임. 현행 기후대응기금은 배출권 매각대금, 교통·에너지·환경세 전입금 등 기존 세입에 주로 의존하고 있어 수입 변동성이 크고, 탄소중립 이행에 필요한 재정 수요 증가에 충분히 대응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최근 주요 선진국들은 기후대응과 녹색전환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정책적 신호를 명확히 하기 위해 녹색국채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재정의 목적성을 강화하고 민간 녹색금융 시장을 활성화하고 있음. 우리나라 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 투자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기존 재원에 더해 새로운 재원 조달 수단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후대응기금의 재원에 녹색국채를 추가하고, 녹색국채 발행 근거와 자금 사용 원칙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보다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확보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2인)	2026-01-06 발의

현행법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계약체결 이후 발생하는 계약금액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경우 등에는 그 부분에 대한 계약은 무효로 하고 있음. 그런데 민간공사의 경우 여전히 수급인에게 불리한 계약이 체결되고 있는 실정에서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 규정한 것은 부당한 특약의 범위를 협소하게 정한 측면이 있으므로 그 요건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불공정한 계약의 요건을 '당사자 일방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경우'로 개정**하여 부당한 특약의 범위를 넓혀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려는 것임 **(안 제22조제5항)**

국토교통위원회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4인)	2026-01-06 발의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이하 "그린리모델링"이라 함)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부문의 경우에는 그린리모델링 의무 규정이 없어 그린리모델링 추진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으며, 민간부문의 경우 이자지원사업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공공 및 민간 부분 모두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공공부문의 에너지 다소비 노후 건축물에 대해 그린리모델링 의무 규정을 마련하고,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보조, 이자지원 등 다양한 지원 수단의 근거를 구체화**하여 그린리모델링이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회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의원 등 12인)	2026-01-07 발의

현행법에 따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택지개발지구,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등 주거정책에 관하여 심의함

그런데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등은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임에도, 현행법에는 회의록 작성·보존 의무만 존재하고 회의록을 공개할 의무는 없어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검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참고로, 「한국은행법」상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 결정 후 의사록을 익명으로 공개하여 정책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음

이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지정·해제 등에 대해서는 회의록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주택시장에 과도한 혼란을 줄 우려가 있는 주거정책 대상지역 및 시기 등에 대해서는 비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거정책 결정의 투명성 및 합리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안 제8조의2 신설 등)**

국토교통위원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복기왕의원 등 18인)	2026-01-08 발의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버스준공영제에 진입한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가 미흡함. 버스준공영제는 민간 경영방식을 활용하면서도 공공 개입과 재정지원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는 제도이나, 사모펀드 진입 후 공공재원이 승객 편익이 아닌 투자자 이익으로만 연결되는 문제가 발생함

수원시 한 업체는 사모펀드 인수 후 차고지를 매각해 367억원을 확보하여 240억원을 대출 상환에 사용하고, 당기순이익 34억원임에도 240억원을 배당(배당성향 698%)함. 인천시의 경우 사모펀드 인수 7개 업체 중 5개 업체의 배당성향이 인수 전 대비 크게 증가(C교통 153%p, E버스 240%p)하였고, 약 2,000억원의 손실지원금이 주로 사모펀드 투자자에게 귀속됨. 서울·경기에서 사모펀드 인수 8개 업체의 64개 노선에서 일일 운행이 1,268.5회 감축되고, 경기도 7개 업체 중 5개 업체는 29개 노선을 폐지하여 시민의 대중교통 접근성이 저하됨

현행법 제23조는 운송시설 개선명령 권한을 부여하나 차고지 매각 금지 규정이 없고, 과도한 배당 제한 장치도 미흡함. 2023년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차고지 매각 시 사전협의 의무를 부과했으나 법적 구속력이 약함

이에 **차고지 등 핵심 인프라 매각을 제한하고, 과도한 배당을 규제하며, 재정지원 배제 조항을 신설**하여 공공재원이 본래 목적대로 시민 편익 증진에 사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8호, 제20조제1항·제2항·제4항, 제21조제13항·제14항, 제21조의2, 제94조제1항제2호의2, 제96조 신설 및 개정)**

국토교통위원회	광역권 개발 및 성장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문진석의원 등 11인)	2026-01-08 발의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 및 인프라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하여 지방은 소멸 위기에 처하고, 수도권은 과밀에 따른 주거환경 악화 등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지역균형발전이 시급한 상황임. 「국토기본법」상 초광역권계획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상 초광역권발전계획을 통해 '5극3특 국가균형성장'을 도모하고 있으나 이는 초광역권 전역을 대상으로 한 공간·산업전략으로, 권역 내부의 거점 대도시, 중소도시권에 실행력 있는 개발계획은 부재함

이에 **광역권(도시권) 단위의 혁신 거점, 교통망 등 사업을 묶어 범부처가 지원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특례를 두어 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광역권을 육성하여 5극3특 경제·생활권 형성을 촉진하고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위원회 일정

구분		일시	내용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1/12(월) 10:00	- 법안 심사
재경위	전체회의	1/12(월) 14:00	- 국무위원후보자(이혜훈)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
농해수위	농림축산식품소위	1/13(화) 10:00	- 법안 심사
정개특위	전체회의	1/13(화) 15:30	-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1/12(월) 10:00	**한국·캐나다 방산협력 확대를 위한 범정부 협업 방안 토론회**	김병주 의원실 등	의원회관 대회의실
	1/12(월) 14:00	**AI 를 통한 대한민국 산업 대변혁을 위한 산업별 AX를 위한 정보 포럼: AI로 안전한 대한민국 포럼**	이학영 의원실	의원회관 대회의실
	1/12(월) 14:00	**대한민국 미래 바이오·헬스 포럼: 규제로 가로막힌 디지털 헬스케어 강국**	이주영 의원실	의원회관 2소회의실
	1/13(화) 14:00	**자율주행기술 관련 산·학·연 간담회**	민형배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세미나실
	1/14(수) 10:00	**테슬라 FSD 국내 상륙과 우리나라 모빌리티 산업의 미래**	박상혁·김한규 의원실 등	의원회관 5간담회의실
	1/14(수) 14:00	**(의료데이터 통합을 통한) 의료 AI 데이터센터 구축으로 AI 주권 확보**	최수진 의원실 등	의원회관 9간담회의실
	1/14(수) 14:00	**신약강국으로 도약하는 약가정책 국회토론회**	김윤·이언주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세미나실
	1/15(목) 14:00	**국방과 사회정책 연속 시리즈 Ⅰ: K-방위산업 ESG 활성화 정책 토론회 방산 ESG 지표 마련을 중심으로**	백선희 의원실 등	의원회관 3세미나실
	1/16(금) 09:30	**전술부대급 드론부대 편성·운용을 위한 정책 세미나**	유용원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세미나실
자료집 등	1/13(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89호(2026-1호) 발간**	국회도서관	
	1/14(수)	**「금주의 서평」 제2026-2호(통권 제761호) 발간**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314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없음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분야	내용
1/8(목)	소송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협의의무 도입 – 개정 가맹사업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1/9(금)	노동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 발간 - 보건 의료 분야 관련 주요 사례 소개
1/9(금)	금융	세종 Financial Regulation Review (2025. 12. 24. - 2026. 1. 6.)

입법전략자문그룹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Group)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백대용 | 변호사

프로필보기

장대섭 | 고문

프로필보기

김성범 | 변호사

프로필보기

방세희 | 변호사

프로필보기

조성환 | 변호사

프로필보기

SHIN&KIM
법무법인(유) 세종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T. 02-316-4114 https://www.shinkim.com